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0

제출일자 : 2006. 4. 21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지방세법령의 개정·시행(2006.1.1)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함.

2. 주요골자

가. 재산세 적용비율을 2005년 50%에서 매년 5%씩 인상토록한「지방세법」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함 (안 제21조)

▷ 토지·건축물 : 2006년부터 적용비율 매년 5%씩 인상

▷ 주택 : 2007년까지는 50%로 현행 유지하고 2008년부터 적용비율 매년 5%씩 인상

나. 주택분 재산세가 2회에 나누어 고지하는 것을 소액인 5만원 이하인 경우 1회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납기 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3조 제1항 및 제3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2006.3.10~3.30(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마. 기 타 : 개정조례표준안 시달(시 세정담당관실-2179, 2006. 2.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를 "시가표준액으로"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 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4. 선 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표준)** ① ---------- 시가표준액으로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4.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